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37

2025/8

발행인 조정희 | 총괄 박수진 | 감수 윤성순 | 담당 김소연

Email dokdo.ocean@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642)

Contents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 2

WTO WTO 수산기금,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제안 요청 시작

국제사법재판소 6

ICJ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발표

지역별 동향

아메리카 13

미국 해양 운송 시스템 사이버보안 및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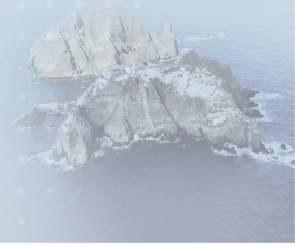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홈페이지(www.km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42) 또는 이메일(dokdo.ocean@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역기구

전문연구원 황수연

WTO

WTO 수산기금,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을 위한 제안 요청 시작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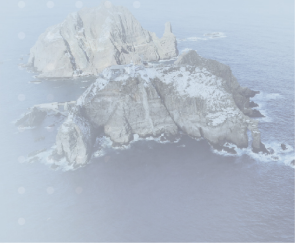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이하 협정)은 회원국의 수락을 통해 발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협정은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의 비준 수락서가 사무국에 기탁될 때 발효되는데¹⁾, 2022년 6월 발효된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인 2025년 8월 28일 기준 총 108건의 수락서가 기탁되어 발효까지 단 3개국의 수락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제 수산업계의 규범적 전환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불법어업 억제와 수산자원 보전이라는 공동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WTO 수산보조금 협정 수락서 기탁 현황(2025년 8월 기준)



사진 출처: WTO 홈페이지

1)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수산보조금 협정을 WTO 협정을 개정(수산보조금 협정을 WTO 부속서 1A에 삽입)하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수락을 위해 의정서를 개방했다(WT/MIN(22)/33 - WT/L/1144). WTO 협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회원국 3분의 2가 개정 의정서에 대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하면 해당 의정서를 발효된다(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주요내용

수산보조금 협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목표로 WTO 차원에서 채택된 최초의 구속력 있는 다자 규범이다. 협정은 해면에서 어획 어업 시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며, 양식·내수면 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외된다. 협정은 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전면 금지, 남획 어종에 대한 보조금 금지, 연안국의 관할권 이원지역과 RFMO 관할 외 수역에서의 수산보조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다. 회원국은 보조금 현황, 수산자원 상태, 수산정책 관련 조치를 WTO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투명성·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보조금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Subsidies)를 설치했다. 그 밖에 협정에 근거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자발적 기금도 마련했다.

다만 후속 협상으로 남겨둔 ‘과잉생산능력 및 남획(OCOF: Over Capacity and OverFishing)’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및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2024.2.26.~3.2.)에서 논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026.3.26.~29.)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WTO 수산기금의 조달 및 운영 메커니즘

설립 배경 및 목적: WTO는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기금(WTO Fisheries Funding Mechanism Trust Fund, 이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²⁾ 이 기금은 수산보조금 협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메커니즘으로, 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이 협정 이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한다. 운영 구조는 WTO를 중심으로 하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가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병행한다.

기금 규모 및 기여 현황: 2025년 6월 기준으로 기금에는 이미 약 CHF 1,450만 스위스프랑(USD 1,750만 달러 상당)이 조성되었으며, 호주, 캐나다,

2) 수산기금은 수산보조금협정 제7조(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WTO 사무국이 기금운영 방식 및 소요 예산에 대한 문서를 예산·재정·행정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수산기금은 2022년 11월 8일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어업 관리 연구 및 역량 강화, 어업 관리 법제도 개선, 해양자원 평가 및 조사, 어업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구축 등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 공모는 2025년 9월 9일까지 접수 예정이나 협정 발효 시 사업 계획서 접수 기한을 1개월 연장하도록 조정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한국³⁾,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가 기여에 동참하였다. 특히 뉴질랜드는 별도로 NZD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CHF 74,000)를 기부하며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기금은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 유형인 ‘프로젝트 준비 지원금’은 최대 5만 달러 규모로 연구, 정책 수립, 사업 수요 평가 등을 위한 기초 단계에 사용된다. 두 번째 유형인 ‘본 사업 지원금’은 최대 30만 달러까지 제공되며 협정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법어업 감시체계 강화, 수산자원 관리 개선, 소규모 어업인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시행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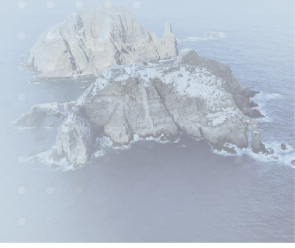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기금 운영 구조: 수산기금 운영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기금의 방향과 제안서 승인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⁴⁾,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소위원회(Technical Subcommittee), 그리고 운영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사무국(Secretariat)이다. 기술소위원회의 핵심 파트너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는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며, 기술 기준에 따른 자금 지원 결정 및 평가를 지원한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혜국의 실질적 필요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정책적 시사점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보조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지속가능한 어업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료 보조금이나 감척 지원 방식은 점차 국제 규범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친환경 어구 사용 지원이나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불법어업(IUU Fishing)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위성 기반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 전자 승선일지, 인공지능 조업 패턴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 역량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조금 축소가 연안 소규모 어업인의 생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소득 지원, 직거래 판로 확대, 어촌 관광 연계형 소득 다변화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2024년 2월 24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LDC)의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수산기금에 미화 100만 달러(약 86만 스위스 프랑)를 기여하기 위한 공여 증서를 WTO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4) 운영위원회 위원: 호주, 바베이도스, 캐나다, 프랑스, 감비아, 독일, 아이티, 아이슬란드, 일본, 모리셔스, 네덜란드, 페루, 필리핀, 세이셸, 시에라리온, 스페인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WTO 수산기금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상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제안서 작성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TAC 제도나 금어기·금지구역 운영 등 우리나라의 어업 관리 경험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 특히 IUU 규제와 관련해 제도 개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이를 개도국에 전수하여 국제 규범 확산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한국이 단순한 기여국을 넘어 규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협정 발효 이후 본격화될 추가 수산보조금 규제 협상(Fisheries Subsidies 2단계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환경 규제 강화 요구와 개도국의 생계 보조금 필요성을 절충하는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 협상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FAO, 세계은행,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s) 간 연계를 통해 한국형 어업 관리 역량 강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국제 어업 규범 확산, 협상 중재, 다자 협력을 통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수산 지속가능성의 실천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출처 : [1] WTO,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ffm_06jun25_e.htm(검색일: 2025.8.18.)
 [2]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ulesneg_e/fish_e/fish_acceptances_e.htm(검색일: 2025.8.18.)
 [3] WTO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rulesneg_e/fish_e/fish_fund_e.htm(검색일: 2025.8.18.)
 [4] 수산기금 조달 메커니즘(WTO Fish Fund), <https://www.wtofishfund.org/>(검색일: 2025.8.18.)
 [5] WTO,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WT/MIN(22)/33 - WT/L/1144)
 [6] REUTERS, '인도 WTO 회의에서 영세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철폐 반대(2024. 1.24.)',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oppose-curbs-subsidies-poor-fishermen-wto-meet-2024-01-25/>(검색일: 2025.8.28.)
 [7] WTO, 'Korea donates USD 1 million to WTO Fish Fund(2024.2.24.)',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4_e/pr950_e.htm(검색일: 2025.8.28.)



국제사법재판소

ICJ

전문연구원 김 지 혜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 발표

지난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이 권고적 의견은 지난 3월 29일 제77차 유엔 총회에 바누아투를 필두로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있는 남태평양 소도서국의 요청에 따라 컨센서스로 채택된 결의안 77/276에 근거하여 진행된 결과물이다.

ICJ는 기후변화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고, 국가들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해 상당한 기후 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을 경우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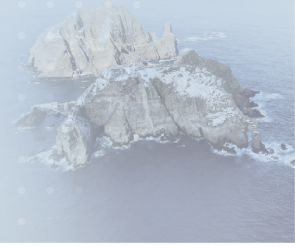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그림 2. 2023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소개하는 바우아투 대통령



사진 출처: JONES/AFP via Getty Images

배경

ICJ에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해당 결의안은 국가들이 세계 기후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들의 기후를 보호할 의무에 대한 작위와 부작위로 인해 소도서국들과 미래 세대에 특히 상당한 기후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따른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유엔 헌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파리협정, 유엔해양법협약, 상당한 주의 의무, 국제인권협약 상 인정된 권리, 심각한 환경 피해 방지 원칙,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 등을 특히 고려하며,

- ① 국가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문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 ② 국가들의 작위와 부작위로 인해 기후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문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다음에 대해 앞서 언급된 국가의 의무에 의한 어떤 법적 결과가 따르는가?
 - (i) 국가,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의 수준에 의해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특별히 취약하거나 특별히 영향을 받거나 또는 피해를 보는 소도서개발도상국을 포함
 - (ii)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효과의 영향을 받는 현재와 미래 세대 사람들과 개인

ICJ의 서면 절차 단계에서 총 91건의 서면 성명서와 62건의 서면 의견서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2024년 12월 2일부터 13일 까지 진행된 공개 구두 절차에는 96개 국가와 11개 국제기구가 구두 발표를 하였다. 이는 ICJ 절차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를 기록한 것으로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중요성을 보여줬다. 우리나라 또한 이번 ICJ 서면 및 구두 절차에 참여하였으며⁵⁾, 기후변화와 국가의 의무에 관한 현행 국제법을 해석하는데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인권법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관습국제법상 심각한 피해 예방 의무와 국제협력 의무도 적용 가능하며, 이러한 의무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해야 하는 행위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후체계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이러한 의무에 따른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론상으로 국가책임론 적용이 가능하나, 기후변화 문제 고유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국가책임론 적용이

5)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ICJ 권고적 의견 구두 절차 참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ICJ 권고적 의견 서면절차 참여는 2018년 차고스 군도 관련 권고적 의견 사건(2019)에서였다.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조약 체제의 “협력적·촉진적 접근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만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며 협력의 의무 또한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⁶⁾

그림 3. 2025년 7월 23일 권고적 의견 발표 당시 ICJ 법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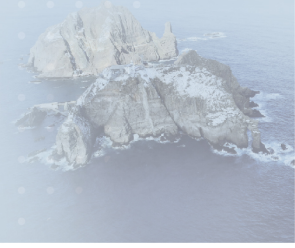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사진 출처: ICJ

주요 내용

우선, ICJ는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ICJ는 유엔 총회가 제시한 질문들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있는 법”을 검토하였으며, 유엔 헌장, 기후변화 관련 조약들(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유엔해양법협약, 그리고 오존층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기각리 개정,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같은 기타 환경 관련 조약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예방할 의무, 환경보호를 위해 협력할 의무 등의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도 확인하였으며,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 국제인권법 역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의 일부라고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원칙, 공통적이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CBDR-RC) 원칙, 형평성, 세대

6) 우리나라가 제출한 ICJ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서면의견과 구두발언문은 ICJ 홈페이지 또는 다음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mofa.go.kr/www/brd/m_3828/view.do?seq=367479



간 형평성, 사전주의 원칙 등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및 기타 국제법적 규범에 따라 국가들의 법적 의무와 이의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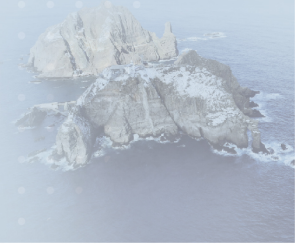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1) 국가의 법적 의무에 관한 주요 의견

① 기후변화 관련 조약법상 국가의 법적 의무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
- UNFCCC 부속서 I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흡수원과 저장고를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추가적 의무가 있다.
- UNFCCC 당사국은 협약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교토의정서 당사국은 의정서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온도 목표 달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조치를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 취해야 한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국가결정기여(NDC)를 준비·제출·유지할 의무가 있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자국의 NDC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추구할 의무가 있다.
- 파리협정 당사국은 기술 및 재정 이전을 포함하여 적응과 협력의무를 성실히(good faith) 이행해야 한다.

②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법적 의무

- 국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활동이 기후 체계 및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방지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무가 있다.
- 국가는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협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형태의 협력을 요구한다.

③ 기타 관련 조약상 국가의 법적 의무

- 기타 환경 관련 조약(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개정,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당사국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체계와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여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조치를 채택하고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국제인권법상 국가들은 기후 체계 및 환경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국가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 관련 주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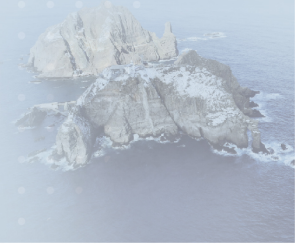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유엔총회 결의안 77/276 질의 (a)에서 확인된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국제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며, 그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며, 해당 국가는 위반된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위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법적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① 위법한 행위나 부작위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의무
- ② 필요시, 위법 행위나 부작위의 불재발 보장(assurance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을 제공할 의무
- ③ 국가책임법의 일반 조건(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국에 대한 완전한 배상(원상회복, 손해배상, 만족)을 제공할 의무

시사점

ICJ의 권고적 의견은 쟁송 사건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며, 향후 각국의 기후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권고적 의견을 통해 ICJ는 기후변화 관련 의무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법적이고, 실질적이며, 집행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기후 거버넌스에 적용될 규범을 제한하려는 특별법적 지위(*lex specialis*) 원칙 기반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국가들이 중대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며, 심화되는 기후 위험 속에서 기본권을 수호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기후 시스템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재판소가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기후변화의 원인, 성격 및 결과에 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과학으로 이해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과학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는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파리협정에 따른 강력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갱신뿐 아니라 민간 행위자의 규제, 취약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국가책임법 하에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판소가 이 권고적 의견의 주문 전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의 80 여년의 역사상 권고적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우는 이번이 다섯 번째⁷⁾로 이는 매우 드문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ICJ는 기후 의무는 현실이며, 법은 그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는 명확하고도 단합된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각 재판관들이 별도의 의견을 통해 이번 권고적 의견에 대한 불만과 한계를 지적하는 등 이번 권고적 의견에서 ICJ가 국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를 거부하고, 국내 및 지역 법원이 취해온 보다 진취적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섬으로써 결국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나, 기후 위기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는 국제법과 그의 사법적 기능이 지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출처 : [1] 국제사법재판소,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Judgment of 19 May 2025, <https://www.icj-cij.org/sites/default/files/case-related/179/179-20250519-jud-01-00-en.pdf>

[2] 국제사법재판소,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The Court gives its Advisory Opinion and responds to the questions posed by the General Assembly', Press Release No. 2025/367, 23 July 2025

[3]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The ICJ's Advisory Opinion

7) 현재까지 ICJ에서 발표된 권고적 의견은 총 29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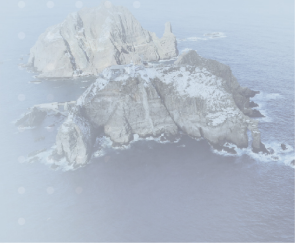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on Climate Change: An Introduction, <https://blogs.law.columbia.edu/climatechange/2025/07/24/the-icj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an-introduction/>(검색일: 2025.8.15.)

[4] Ejiltalk, 'Disaster Passing as Miracle? A Critical Take on the ICJ's Climate Advisory Opinion', 2025년 8월 14일, <https://www.ejiltalk.org/disaster-passing-as-miracle-a-critical-take-on-the-icjs-climate-advisory-opinion/>(검색일: 2025.8.15.)

[5] The Guardian, 'Countries must protect human right to a stable climate, court rules',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jul/03/countries-must-protect-human-right-to-a-stable-climate-court-rules>(검색일: 2025.8.15.)

[6] 외교부, "ICJ 기후변화 관련 권고적 의견 구두절차 참여", 2024년 12월 12일, https://www.mofa.go.kr/www/brd/m_3828/view.do?seq=367479(검색일: 2025.8.25.)



아메리카

미국

전문연구원 황수연

해양 운송 시스템 사이버보안 및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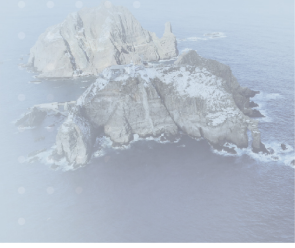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2025년 7월 16일,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해양 운송 시스템(MTS: Marine Transportation System)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최종 규칙(이하 규칙)’을 발효했다. 이 규칙은 미국 국적 선박(U.S.-flagged vessels), 해양 대륙붕(OCS) 시설, 해양 교통 보안법(MTSA)의 적용 대상 시설과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에 적용된다. 이 규칙은 MTS 내 증가하는 사이버 연결성 및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송 안전 사고(TSIs: Transportation Security Incidents)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위협 탐지·대응·복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해양 운송 체계 내 사이버 취약성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도입한다.

‘해양 운송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최종 규칙’ 주요 내용

2025년 7월 16일부터 ‘해양 운송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의 모든 보고 대상 사이버 사고는 지체 없이 국가대응센터(NRC: National Response Center)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는 이전의 자발적 보고 체계를 의무 보고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사이버 사고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한 2026년 1월 12일까지 해당 시설과 선박의 모든 직원은 사이버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7년 7월 16일까지 시설 및 선박 소유자·운영자는 사이버보안 책임자(Cybersecurity Officer)를 지정, 사이버보안 평가(Cybersecurity Assessment) 수행, 사이버보안 계획(Cybersecurity Plan) 작성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 규칙은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에 사이버보안 요건을 포함 시키는 역할을 하며, 불이행 시 선박 억류, 입항 거부, 운항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 7월 23일 미국 하원에서 해양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2025 해안경비대법(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of 2025, 이하 법안)⁸⁾’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29년까지 해안경비대의 함대, 항공

8) H.R.4275 - 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of 2025



및 해안 기반 시설, IT 역량의 현대화, 자율기술 도입 추진을 위한 예산 승인과 성폭행 및 성희롱 대응 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해양 안전 확보, 국경 경비 강화, 불법 이민·마약 밀수 대응, 선원 자격제도 개선, 미국 내 'US-Build' 기준 강화, 해상 운항 규정 개선 등도 주요 정책도 포함하고 있으며, 해안경비대장에 '장관급 (Secretary of the Coast Guard)' 지위 부여를 통해 타 무장 조직과의 위상 평준화를 추진한다.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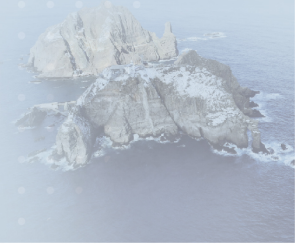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미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사이버 사고 의무 보고,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 계획 수립·승인을 법률로 의무화했다. 한국 역시 국적 선박과 연안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보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 분야 특화된 전담 조직 구축은 사이버 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단계적 이행 구조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사이버 사고 즉시 보고를 우선 시행하고, 일정 기간 내 전 직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2년 후에는 보안 책임자 지정과 계획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는 단계적 이행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업계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법적 기준을 설계한다면 현장의 저항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항만국 통제(PSC)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결합해 외국 선박에까지 사이버보안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재 권한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규범과 연계한 사이버보안 검증 메커니즘 확보로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이버보안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해양산업 보호와 동시에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항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 역량과 제도적 위상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해안경비대장에 장관급 지위를 부여하고 조직 문화 혁신 및 자율 기술 도입을 병행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예산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직의 신뢰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자율 기술을 적극 활용하듯, 우리나라도 드론 기반 해양 감시,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 탐지, 자동화 보안 솔루션 도입을



장려하고 민·관 협력과 기술 혁신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적 적용, R&D 지원 확대,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된다면 산업 혁신과 정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해양 운송 시스템 사이버보안 및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례는 우리나라 또한 해양 운송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신속히 정비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해양 운송망은 국가 경제와 물류의 핵심 기반인 동시에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분야이므로, 제도적 대응을 미룰 경우 대규모 피해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계적 시행 체계 마련, 국제 협력 강화, 조직 역량 제고, 기술 혁신 촉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1] 미국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https://www.news.uscg.mil/maritime-commons/Article/4033732/final-rule-cybersecurity-in-the-marine-transportation-system/>(검색일: 2025.8.18.)
- [2]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17/2025-00708/cybersecurity-in-the-marine-transportation-system>(검색일: 2025.8.18.)
- [3] National Law Review, 'New Maritime Cybersecurity Era Begins: Coast Guard Rule Takes Effect(2025.7.23.)' <https://natlawreview.com/article/new-maritime-cybersecurity-era-begins-coast-guard-rule-takes-effect>(검색일: 2025.8.18.)
- [4] 미국 하원 교통 및 인프라 상임위원회(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ouse Approves 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of 2025(2025.7.23.)' <https://transportation.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408990>(검색일: 2025.8.18.)
- [5] 미 의회(Congress), 'H.R.4275 - Coast Guard Authorization Act of 2025'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4275/text?sr=3&r=1&q=%7B%22search%22%3A%22H.R.4275%22%7D#toc-HD93FD452A1F44861ABF7538218A7338F>(검색일: 2025.8.18.)



3개월 내 행사계획

제48회 해양법정책연례컨퍼런스(COLP48) | 2025년 9월 9일-12일 / 인도 뉴델리

- **주요 내용** 제48회 해양법정책연례컨퍼런스(The 48th Annual Conference on Oceans Law & Policy)는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발전적 접근: 환인도양의 관점에서 (Developing World Approaches to Ocean Governance: Perspectives from the Indian Ocean Rim)’라는 주제로 국제 해양법 및 거버넌스의 혁신에 대해 논의할 예정

주요 논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전지구적 삼중 위기(Triple Planetary Crisis):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및 오염
- 레짐 간 상호작용과 비국가행위자의 역할, 인도양지역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의 특수 이해관계
- 해저 광물 채굴, 해상 석유·가스 및 중요 인프라
- 수산업과 식량안보, BBNJ 협정의 비준과 이행
- 국제 무역과 해운, 그리고 해양안보
- 해양에서의 신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 인도양의 미래 해양 거버넌스

아시아국제법학회 제10차 컨퍼런스 | 2025년 10월 9일-10일 / 베트남 하노이

- **주요 내용** 아시아국제법학회(Asi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제10차 컨퍼런스는 “아시아에서의 국제법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

제12회 여수해양법아카데미 | 2025년 10월 20일-31일 / 여수

- **주요 내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 개발도상국의 해양정책 및 해양환경 문제 대처 지원 사업 추진을 국제사회에 약속한바에 따라 개도국의 공무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여수로 초청하여 2주 동안 국제해양법에 대해 교육하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

2025년 국제법학자대회 | 2025년 10월 24일 / 서울 고려대학교

- **주요 내용** 대한국제법학회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연례학술행사로, 국제기본이론 및 역사, 국제공역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및 국제형사법, 국제분쟁의 해결 및 국제기구법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